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보

제192호 2019. 8. 8.

선람	기관의 장



회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390호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3
○ 제2391호 청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8
○ 제2392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제2393호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제2394호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3
○ 제2395호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제2396호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규 칙

○ 제1240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3
○ 제1241호 청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훈 령

○ 제310호 청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 56

고 시

○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 64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0호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청양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시설인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다.「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12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및 해당 읍장·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

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1호

청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 ·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평가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경영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영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2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을 “시신을 매장하거나 유골을 안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수장하기”를 각각 “안치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시체를”을 각각 “시신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망한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자를”을 “시신이나 유골을”로 한다.

제3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초과할”을

각각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체나 유해를”을 “시신이나 유골을”로,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하는 자”를 각각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순번에”를 “차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순번을”을 “차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의”를 “등을”로, “자에 한하여 시체운반기구 및”을 “사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을 “(사용료 등의 납부 및 중도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최초관리비”를 “최초 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용계약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야 한

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등의 감면)”을 “(사용료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를 “사람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3조제1항제4호 중 “수장”을 “안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을 “면제”로,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모원”을 “추모공원”으로, “자가”를 “사람은”으로, “조치를 명할”을 “조치처분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안장대장자”를 “안장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장해 올”을 “이장해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군수가 명하는”을 “그 밖에 군수가 처분을 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원상복구를 명하거”를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하는”을 “주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존시설물을 임의 교체하거”를 “기존 시설물을 임의 바꾸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관을”을 “경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를 명할수”를 “조치처분을 할 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를 “지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여한다”를 “이바지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묘지사용 계약자”를 “묘지 사용계약자”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의”를 “위탁받은 자의”로, “수탁자로”를 “위탁받은 자로”로,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을 “관계 서류 등의 제출처분을 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심의조정하기”를 “심의·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조정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묘 지	㎡ 당	70,000원	매장시 1회에 한함
봉 안 당	개인단 1위	100,000원	안치시 1회에 한함
	부부단 1위	200,000원	

묘지 및 봉안당 관리비

(단위 : 원/15년)

종 별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묘 지	㎡ 당	40,000원	최초계약시와 연장계약시 납부
봉 안 당	개인단 1위	50,000원	최초계약시와 연장계약시 납부
	부부단 1위	100,000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환급기준〈신설〉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6년	45%	11년초과~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7년	40%	12년초과~13년	12%
1년초과~2년	65%	7년초과~8년	35%	13년초과~14년	10%
2년초과~3년	60%	8년초과~9년	30%	14년초과~15년	7%
3년초과~4년	55%	9년초과~10년	25%	15년초과	5%
4년초과~5년	50%	10년초과~11년	20%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3호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4호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오랫동안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5호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중증 장애인(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조례 제2396호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7

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규칙 제1240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로, ""별표 1""을 "별표 1"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안당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제3호 중 “유골상자는 목재 또는”을 “유골함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재교부신청”을 “재교부 신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시설물을 사용시”를 “시설물 사용 시”로, “석물대금 기타비용”을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5조에 따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에 따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계약서 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신청인 성명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신청인 성명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장을 요하는 묘지의 연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개장기간란 중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일간)”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용계약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소란 중 “주민등록번호 및 설치자와의 관계”를 “삭제”하며, 뒤쪽 매장자란 중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각각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망자,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

구 분		규 격			재 료
		가 로	세 로	높 이	
봉안함	개인단	30㎝	30㎝	30㎝	강화유리형
	부부단	58㎝	30㎝	30㎝	
유골함		20㎝	20㎝	20㎝	도자기

[별표 4]

계 약 서

제1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양군수를 “갑” 이라 하고 묘지사용신청인을 “을”이라 칭하며 묘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 분	단 지	단	번	면 적	비 고

제2조(계약금)

구 분(합계)	사 용 료	관 리 비 (15년)	기 타

제3조(사용시의 제한) “을” 은 상기묘역이나 봉안당은 묘지나 봉안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 이 지정한 시설물등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사용권) “을” 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묘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갑” 은 “을“ 에게 별도 서식 계약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비) ① “을” 은 묘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계약 체결시 “갑” 에게 선납한다.
② 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액시는 “을” 은 “갑” 이 고시한 관리비를 “갑” 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미납시의 처리) “을” 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은 묘지관리의 일체 책임을지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무연고 분묘로 간주 처리한다.

제7조(재계약) 사용기간 15년 경과 후 “갑” 과 “을” 은 재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분묘의 규격) “갑”은 분묘를 설치함에 있어「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외의 분묘는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을” 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매장통보) “을” 은 계약한 묘지내에 분묘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 “갑” 은 “을” 로부터 제10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역, 매장작업등은 “갑” 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소요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제12조(설치거부) “갑” 은 “을” 이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매장 및 합장을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묘역관리) “갑” 은 “을” 이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묘역을 관리한다.

제14조(석물관리) 석물대금은 “을” 이 매장시 납부하고 석물의 설치는 “갑” 의 책임하에 설치하되 석물의 규격은「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5조(관리자의 책임) “갑” 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묘 및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원활한 묘지관리를 위하여 “을” 은 사용자로서 사용권의 승계 또는 주소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나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약) “갑” 은 “을” 이 조례 제1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 이 기 납부한 묘지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을” 이 기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타 묘지로 이장하였을 때
2. 기타 “갑” 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기타) 본 계약은 현행 관계법령,「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내에서 유효하며 개정 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 보관)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청 양 군 수 :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사용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사
망
자</td><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성 명</td><td>한글
한문</td><td>성별</td><td>남、여</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사망 년월일</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망 원 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망 또 는
개 장 장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매 장 또 는
납 골 장 소</td><td colspan="5">청양군추모공원,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td></tr>
<tr><td colspan="2">매 장 또 는
납골 년월일</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7">첨부서류 : 개장、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 가사용신청서〈삭제〉

<table>
<tr><td rowspan="2">안치할자</td><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성 명</td><td>한글
한문</td><td>성별</td><td>남、여</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안치할 장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을 가사용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1. 계약구분 : 묘지, 봉안당
2. 계약장소 :
3. 계약기간 :
4. 계약대상 :

주 소		
성 명	( )	( )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계 약 조 건

1. 전면에 개재한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재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사용계약을 받지 않으면「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납골합니다.

2. 관리비는 매 15년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망후 기 계약한 장소에 매장하지 않거나 이장해올 유해를 3년이내 매장하지 않을때 사용계약이 취소되며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치 않습니다.

4. 묘지나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법률」,「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중인 분묘는 관리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재교부신청서

사망자 및안치 대상자	주 소		
	성 명	한글 한문	한글 한문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매 장 (안 치) 구 분		묘지, 봉안당	
매 장 (안 치) 장 소			
매 장 (안 치) 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 : 분실, 훼손사유서

[별지 제5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자 변동사항신고서

사용시설	구 분			
	장 소			
	소 재 지	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3		
	계약번호		규 모	
매 장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명		생 년 월 일	
당 초 계 약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변 경 계 약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사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 장 명 령 서

귀하

1. 개장을 요하는 분묘의 장소 : 단지 단 번

2. 매장자
가. 성명 : 성별 : 남·여 생년월일 :
나. 성명 : 성별 : 남·여 생년월일 :

3. 개장을 요하는 묘지의 연고자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4. 개장을 명하는 이유

5. 개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상기와 같이 개정을 명하니 기간내 개장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시 관계규정에 의거 직권 조치코자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개 장 신 고 서

1. 사망자
   가. 성명 :　　성별 : 남、여　　생년월일 :
   나. 성명 :　　성별 : 남、여　　생년월일 :

2. 사망자와의 관계

3. 사망년월일 :　　년　　월　　일　　년　　월　　일

4. 매장장소 :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

5. 개장이유 :

6. 개장년월일 :　　년　　월　　일

7. 개장장소 :

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매장된 시체(유해)를 개장하고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 : 계약증 1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추 모 공 원 묘 적 부

소 재 지	청양군 화성명 수정리		지번	산 126외1	지목	묘지
시 설 구 분	묘지	면적(㎡)	45,925	분묘형태		
설치 년월일		설치기수	단지 단 번	시설물설치현황		
분묘설치기간만료일						

설치자	성명	청양군수		사망자와의관계	
	주소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전 화	
사용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관계	
	주소				

설 치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추 가 매 장 (합장)		
사용계약자의 변경		
변 경 사 유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

(뒷쪽)

<table>
<tr><td rowspan="11">매
장
자</td><td>성 명</td><td></td><td>성 별</td><td></td><td>생년월일
(나이)</td><td>(　　세)</td><td>분 묘
설치일</td><td></td></tr>
<tr><td>등록
기준지</td><td colspan="3"></td><td>사망일시/장소</td><td></td><td>매 장
신고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 :　　)</td><td>사인</td><td></td><td>설 치
만료일</td><td></td></tr>
<tr><td colspan="8">설 치 변 경 사 항</td></tr>
<tr><td>구 분</td><td colspan="2">변경일</td><td colspan="2">변경전</td><td colspan="3">변경후</td></tr>
<tr><td>변 경
사 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td></tr>
<tr><td>구 분</td><td colspan="2">연장신청일</td><td colspan="2">연장(변경)기간</td><td colspan="3">연장(변경)사유</td></tr>
<tr><td rowspan="3">연 장
(변경)
사 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11">매
장
자</td><td>성 명</td><td></td><td>성 별</td><td></td><td>생년월일
(나이)</td><td>(　　세)</td><td>분 묘
설치일</td><td></td></tr>
<tr><td>등록
기준지</td><td colspan="3"></td><td>사망일시/장소</td><td></td><td>매 장
신고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 :　　)</td><td>사인</td><td></td><td>설 치
만료일</td><td></td></tr>
<tr><td colspan="8">설 치 변 경 사 항</td></tr>
<tr><td>구 분</td><td colspan="2">변경일</td><td colspan="2">변경전</td><td colspan="3">변경후</td></tr>
<tr><td>변 경
사 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td></tr>
<tr><td>구 분</td><td colspan="2">연장신청일</td><td colspan="2">연장(변경)기간</td><td colspan="3">연장(변경)사유</td></tr>
<tr><td rowspan="3">연 장
(변경)
사 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able>

[별지 제9호서식]

<table>
<tr><td colspan="8">추모공원 봉안당 봉안부</td></tr>
<tr><td rowspan="2">화장
납골
시설</td><td>소 재 지</td><td>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 126</td><td>전화번호</td><td></td><td>신고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대 표 자</td><td>청양군수</td><td>신고시설명</td><td>추모공원봉안당</td><td>운용주체</td><td colspan="2">청양군</td></tr>
<tr><td rowspan="5">사
망
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사망장소</td><td></td><td>사망연월일</td><td></td><td>사인(병명)</td><td colspan="2"></td></tr>
<tr><td>화장신고번호</td><td colspan="2"></td><td>화장연월일</td><td colspan="3"></td></tr>
<tr><td>봉안기간</td><td colspan="2"></td><td>봉안위치
(관리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d>사망자와의
관 계</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봉안안치장소의 사진</td><td colspan="5">특 기 사 항</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5"></td></tr>
</table>

[별지 제10호서식]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신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안치장소	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					
최초계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안치장소	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					
최초계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규칙 제1241호

청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

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 제2항 중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를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 금지"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을 "수립하고, 매년"으로, "교육을 하여야"를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 제4항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통지”를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9년　8월　8일

청양군 훈령 제310호

청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청양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① 청양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장은 평일 주간은 안전재난과장이 되고, 평일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은 「청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따른 당직사령이 겸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난발생과 응급조치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
2. 재난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전파
3. 중앙ㆍ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ㆍ지역 사고수습본부와 긴밀한 협조ㆍ지원
4.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 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요청 등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장 상황실 운영

제5조(상황실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항상 운영하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는 안전재난과에서, 그 외 시간인 야간(18:00～

다음 날 09:00)과 토요일·공휴일에는 근무 명령을 받은 당직자가 당직실에서 상황실 근무를 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실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군수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연말연시의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재난관리 상황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신고) 상황근무자는 근무시작 이후 지체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근무자는 주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군수, 부군수, 담당과장 등 보고 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나 팩스(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매일 1회 보고하는 재난상황근무일지로 보고
2. 수시보고: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수시보고

제5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0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조치 요령, 비상연락망, 유관 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 수칙 등을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업무 설명서를 작성하여 상황근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 관리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재난 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관리 및 점검

제12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종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항상 최신 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점검)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훈련 및 근무 환경

제14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 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당일 상황근무자는 3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 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前)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근무시작 즉시 NDMS에 등록하여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 신고
   - 전(前)근무자는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평시 : 재난상황근무일지 작성
   ○ 수시 : 재난 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 - 중간 - 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군수, 부군수 및 담당과장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근무자가 직접 보고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FAX 등을 활용하여 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 외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단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담 당 자	팀 장	과 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전결				

○ 근무일시 : 년 월 일 (주간, 야간) 날 씨 ( )

당직반장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상황근무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인계자			소 속		성 명	(인)
인수자			소 속		성 명	(인)
지시(협조) 사항	○ ○					

시 스 템 점 검 및 근무자신고 여부	여 / 부	서명
- 불시훈련 및 상황전파시스템 사용법 숙지		
- 스피커 볼륨 적정, 네트워크 정상		
- 재난상황근무자 NDMS신고		

※점검방법 : 매뉴얼 참고, 바탕화면 스피커 볼륨 확인 파일 클릭, 상황전파메신저 검색버튼 누름, 메시지창 확인

○ 중요사항 상황관리

일 시	내 용
	- 주요 사건·사고 (화재, 교통사고, 수난, 기타 등)
	- 재난상황전파 수신 / 회신 훈련

○ 기상상황

평시상황	특보 발효 전 및 특보(예보특보□ 주의보□ 경보□) 발효 시 기상유형			
특이사항 없음	강수	적설	태풍	기타( )

청양군 고시 제2019 - 5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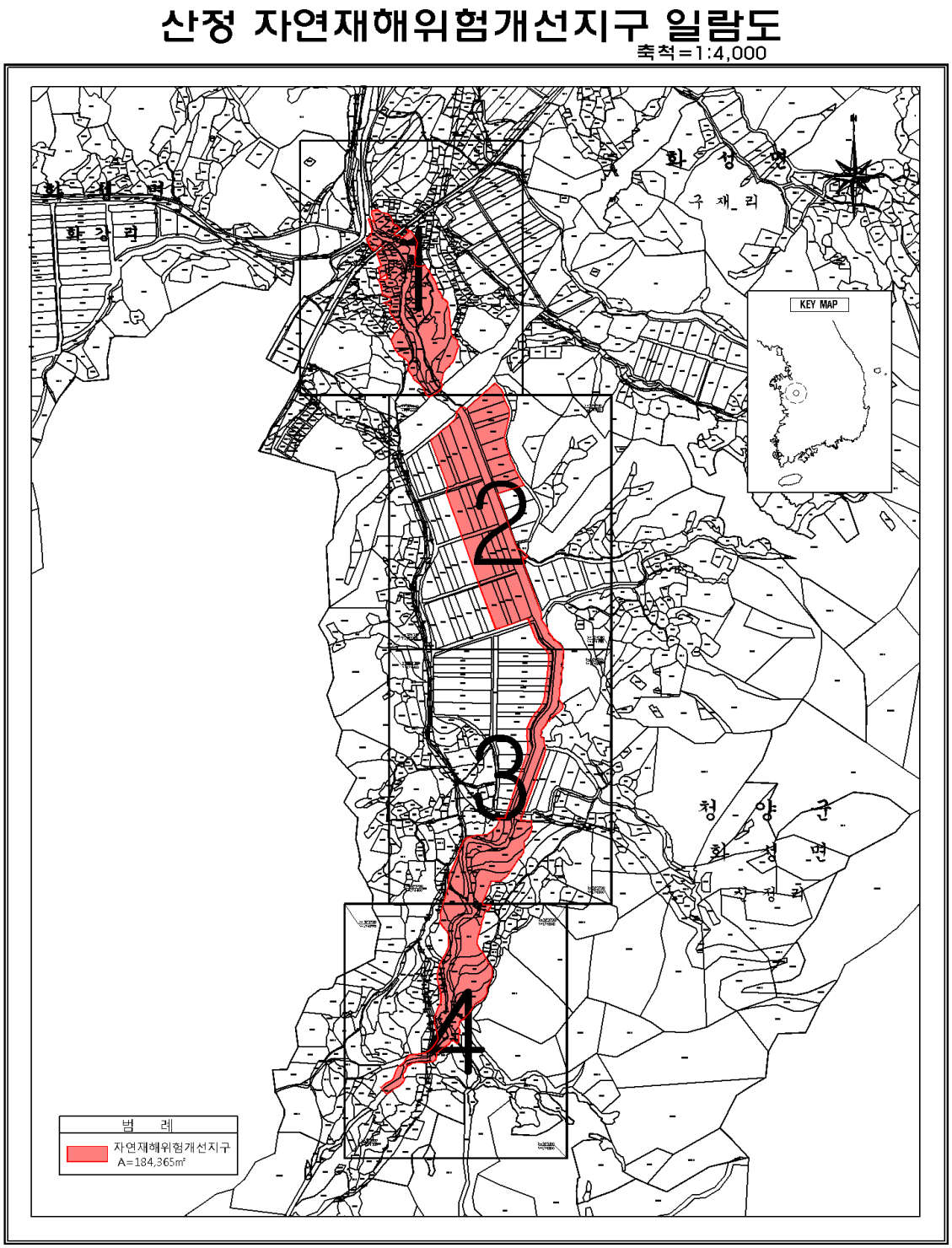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산정천지구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205-1번지 일원	침수위험	가	184,365	•하폭협소로 인한 통수능부족과 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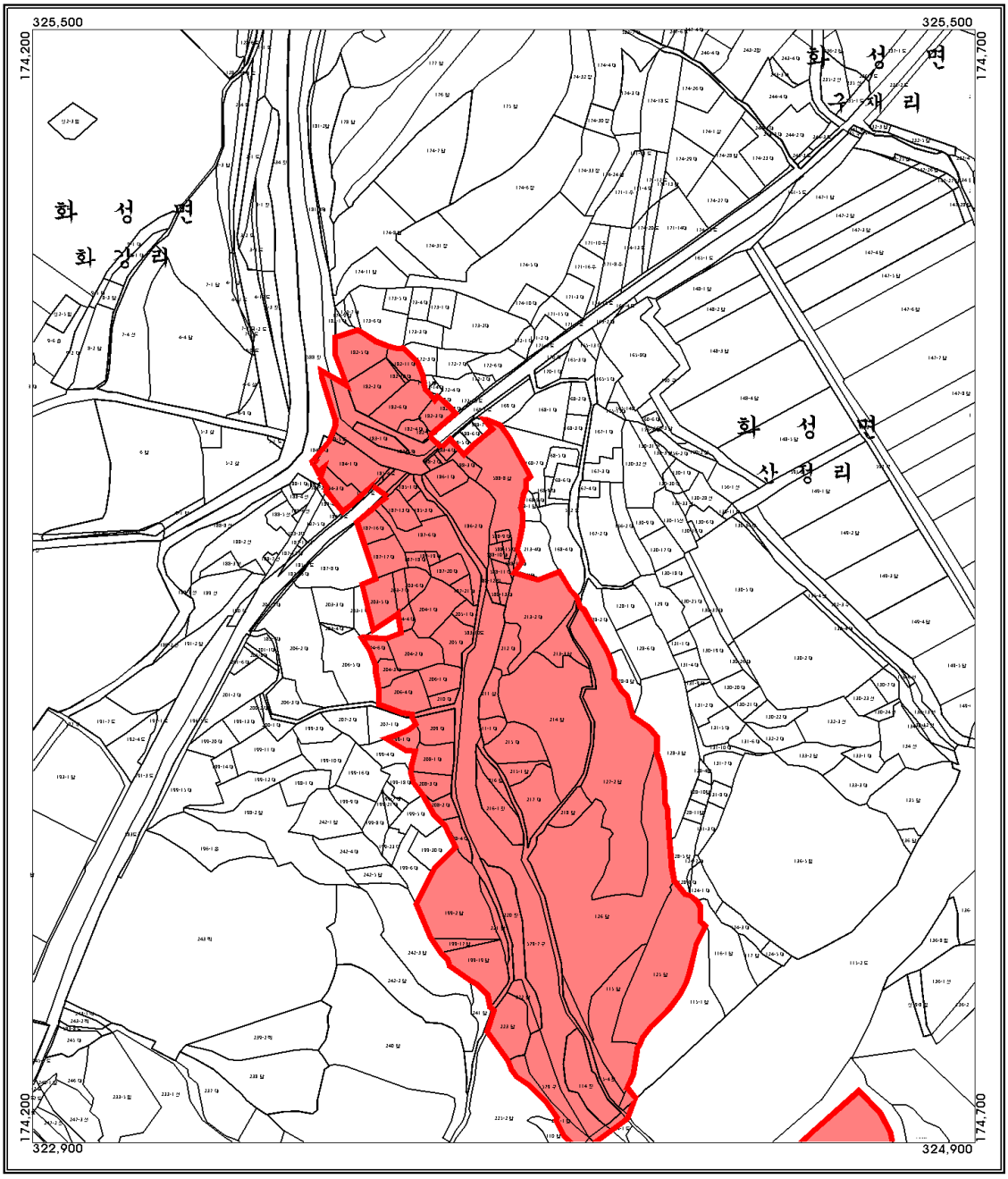
2019년 07월 31일

청 양 군 수

□ 산정천지구 지형도면


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일람도
축척=1:4,000
화 상 면
구 재 리
화 강 리
KEY MAP
1
2
3
4
청 양 군
화 성 면
지 정 리
범 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A=184,365㎡

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도(1/4)



축 척 = 1:1,000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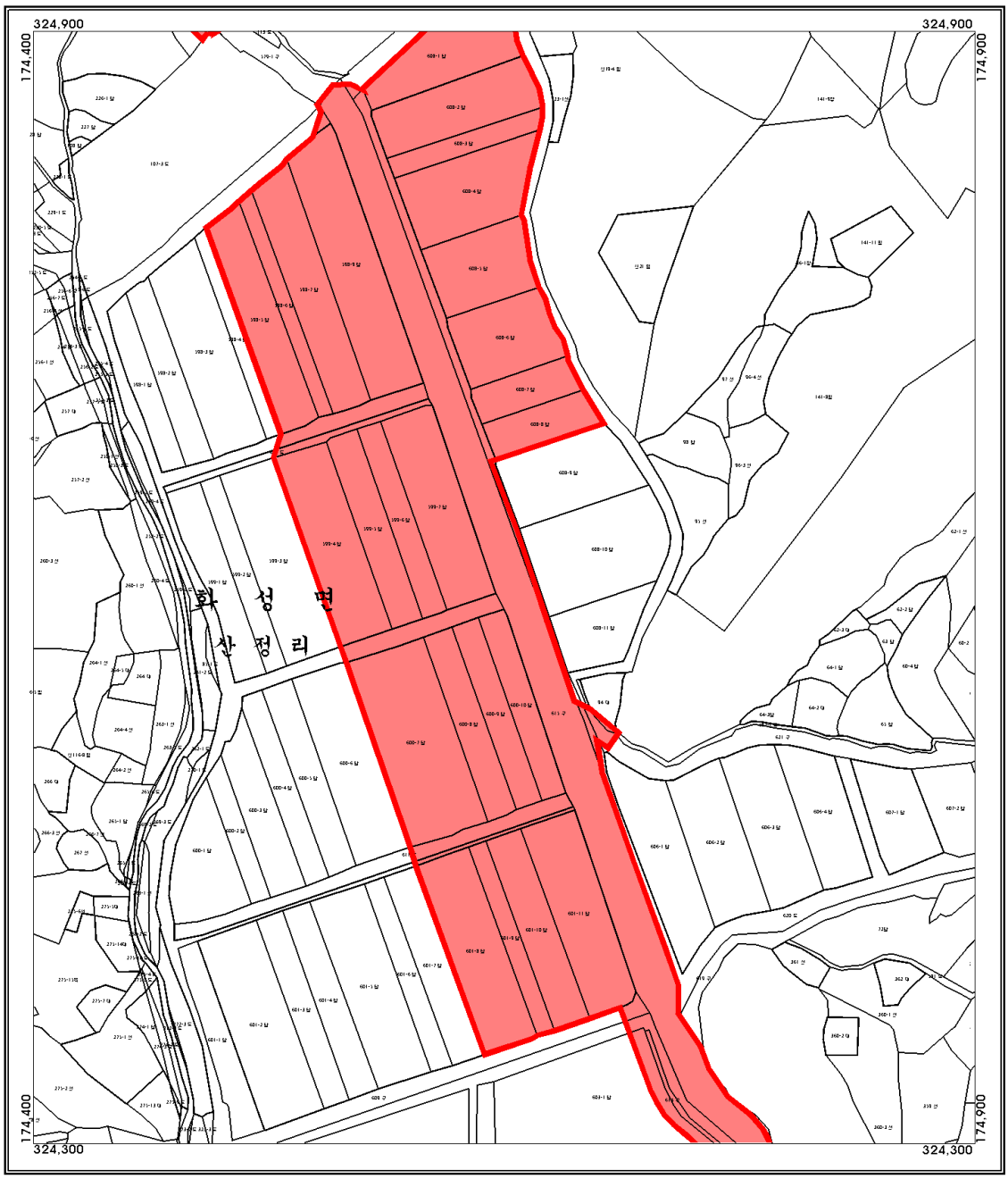
행정구역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자	충청남도 청양군수	지정일자	2019년 6월 일
고시년도	2019년 6월	고시번호	청양군 고시 제2019 - 호
작 성 자		작성년월일	2019년 6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청양군		

<색 인 도>

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도(2/4)



축 척 = 1:1,000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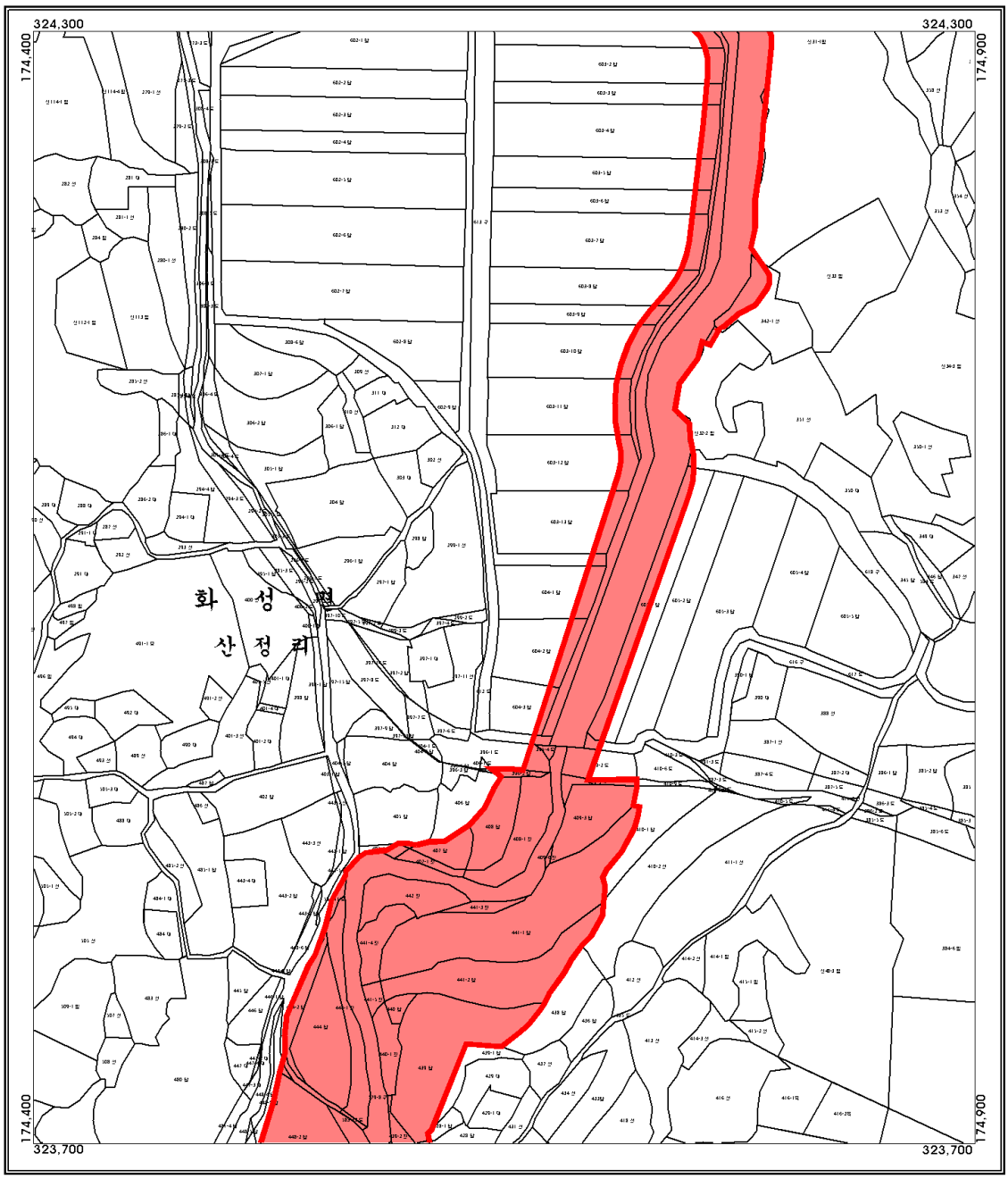
행정구역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자	충청남도 청양군수	지정일자	2019년 6월 일
고시년도	2019년 6월	고시번호	청양군 고시 제2019 - 호
작 성 자		작성년월일	2019년 6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청양군		

<색 인 도>

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도(3/4)



축 척 = 1:1,000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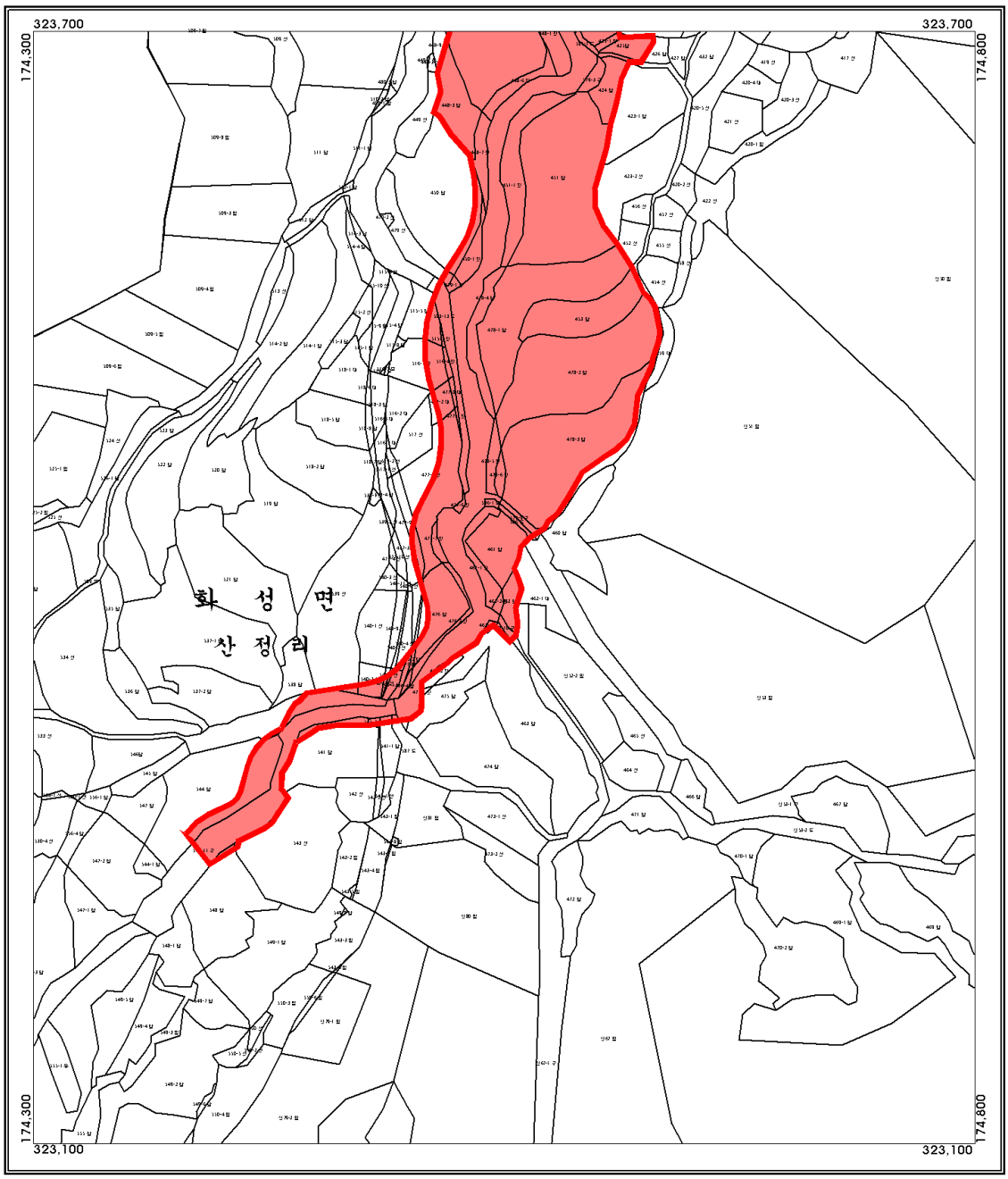
행정구역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자	충청남도 청양군수	지정일자	2019년 6월 일
고시년도	2019년 6월	고시번호	청양군 고시 제2019 - 호
작 성 자		작성년월일	2019년 6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청양군		

<색 인 도>

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도(4/4)



축 척 = 1:1,000

<범 례>

행정구역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자	충청남도 청양군수	지정일자	2019년 6월 일
고시년도	2019년 6월	고시번호	청양군 고시 제2019 - 호
작 성 자		작성년월일	2019년 6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청양군		

<색 인 도>